

광주지방법원 2015. 2. 10 선고 2014가단24476 판결 [이행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2015. 1. 20.

판결 선고2015. 2. 10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2013. 4.경 피고와 별지 기재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그 무렵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1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원고들은 2013. 5. 2. 및 같은 달 3일 오리 합계 20,000마리를 입추하여 2013. 6. 17. 및 같은 달 18일 오리 합계 17,840마리를 출하하였고, 2013. 7. 9. 오리 27,900마리를 입추하여 2013. 8. 27. 및 같은 달 28일 합계 26,722마리를 출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3, 4호증(이하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계약기간인 1년 동안 오리 10회 사육, 1회당 오리 30,000마리 사육, 오리 1마리당 400원의 농장사용료가 남는 것이 불가능하고,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였다.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통장을 공동명의로 관리하거나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방문하여 관리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은 41,508,000원(이행보증금 10,000,000원 포함)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,000,000원 {= (이행보증금 10,000,000원 + 손해배상금 20,000,000원) ÷ 2}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전 오리사육과 관련한 일을 해 왔고 이 사건 계약 전 오리농장에 방문하여 오리농장의 규모 등을 파악하였던 점,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1년 동안 오리농장을 운영하여 피고에게 오리농장 사용료로 오리 1마리당 400원을 지급하되, 이 사건 계약기간 1년 내 피고로부터 피고가 D으로 임차한 오리농장을 230,000,000원에 양수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, 원고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230,000,000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원고들의 책임인 점, ③ 피고가 2012년경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75,000,000원에 오리농장을 임차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행보증금은 10,000,000원, 원고와 피고들이 정한 양수대금 역시 230,000,000원에 불과한 점, ④ 을 제1, 2호증의 기재 및 변론에 나타난 오리농장의 규모 및 양육방법에 비추어 보면

1년 동안 오리 10회 사육, 1회당 오리 30,000마리 사육. 오리 1마리당 농장사용료 400원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에게 이를 보장하였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, ⑤ 비록 피고가 원고들 및 피고 공동 명의의 은행계좌에 오리사육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나,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농장사용료 및 사육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⑥ 피고가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오리농장에 방문하여 관리협의를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이행을 거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.

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성준

별지